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380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주호영・김장겸・김성원
강대식・박충권・박준태
이달희・김 건・김용태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,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,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로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의료인”이라 한다)이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	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로서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(이하 이 조에서 “의료인”이라 한다)이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